

의안번호	제 589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4월 일 (제355회)

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임순묵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7년 4월 11일

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순묵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8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4월 11일
발 의 자 : 임순묵, 이광진, 강현삼,
김봉희, 박병진, 장선배,
윤은희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의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변경하고, 원인조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에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)

- “지진피해” → “지진재해”
- 「지진재해대책법」 →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
- “피해규모” → “재해규모”

나. 원인조사단의 임무 신설(안 제6조)

다.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사항 변경(안 제9조)

라. 타 시도 지원요청 시 지원사항 변경(안 제10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협의 : 재난안전실 치수방재과와 협의되었음

라. 입법예고 : '17. 4. 4. ~ '17. 4. 9.

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0조에 따른 지진피해”를 “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0조에 따른 지진재해”로, “피해가”를 “재해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지진피해”를 각각 “지진재해”로, “지진재해 원인”을 “원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지진피해 원인조사단””을 ““지진재해 원인조사단””으로, “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”을 “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”으로, “관련분야”를 “지진재해 관련분야(이하 “관련분야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지진피해 원인조사단원””을 ““지진재해 원인조사단원””으로, “전문가로써”를 “전문가로서”로, “지역본부장이 단원으로 임명하여”를 “지역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단 단원으로 임명받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조사단원을 사전”을 “사전”으로, “구성·관리하여야”를 “조사단원을 구성·관리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전문가로”를

“전문가로서”로, “지진재난”을 “지진재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호에”를 “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학·협회”를 “학회와 협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피해원인조사”를 “지진재해 원인조사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피해발생원”을 “재해발생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지진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”을 “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0조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”을 “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시·군 지진재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

6. 지진재해 수습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

제6조제7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지시하는”을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지진피해”를 “지진재해”로, “실시 기간”을 “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피해규모”를 “재해규모”로, “원인조사 기간을 충청북도”를 “충청북도”로, “연장하여 운영”을 “원인조사 기간을 연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피해규모”를 “재해규모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현지조사”를 “조사단장은 현지조사”로, “지진피해”를 “지진재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최종 지진피해 원인조사

결과보고서는”을 “조사단장은”으로, “작성·완료하고,”를 “지진재해 원인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”로, “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”를 “제출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조사단장은 지진재해경감”을 “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 경감”으로, “추가적”을 “조사단장으로 하여금 추가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진피해”를 “지진재해”로, “「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」를 작성·발간하고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”를 “「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」를 발간하여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진피해”를 “원인조사를 위하여 지진재해”로, “등을 지원하거나”를 “등 필요한 지원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진피해”를 “지진재해”로, “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”를 “원인조사단의 파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원인조사단”이라 한다)이란
원인조사를 위해 시·도 재난
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
“충청북도 지역본부장”이라
한다)이 관련분야 전문가로
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.

3. “지진피해 원인조사단원”(이하
“조사단원”이라 한다)이란
지질·건축·토목 등 관련분
야 전문가로써 충청북도 거주
자 중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
단원으로 임명하여 원인조사
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5조(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
등)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
원인조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성
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조사
단원을 사전에 관할지역 학·협
회 등의 산·학·연 전문가로
구성·관리하여야 하며, 별표 1
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하여
조사단원 수를 정할 수 있다.

② 원인조사단의 단장(이하 “조
사단장”이라 한다)은 조사단원
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
가로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정

----- 충청북도 재
난안전대책본부장-----

----- 지진재해 관련분야(이
하 “관련분야”라 한다) --.

3. “지진재해 원인조사단원”---

- 전문가로서 -----
----- 지역본부장으
로부터 원인조사단 단원으로
임명받아 -----.

제5조(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
등) ① -----

----- 사전-----

조사단원을 구성·관리하여야

-----.

② -----

----- 전문
가로서 -----

하고, 간사는 지진재난 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.

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.

1. 별표 1의 관련분야 학·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

2. (생략)

④ 조사단장은 피해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·운영한다.

제6조(원인조사단의 임무)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·분석에 관한 사항

2. (생략)

3. 「지진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

4.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

----- 지진재해 -----
-----.

③ ----- 호의 -----
-----.

1. ----- 학회와 협회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지진재해 원인조사 -----

-----.

제6조(원인조사단의 임무) -----

-----.

1. -----
재해발생원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 20조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 -----

4. -----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 -----

<신 설>

5. 그 밖에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

<신 설>

제7조(원인조사 시기)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감안하여 원인조사 실시 기간을 정한다.

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원인조사 기간을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현지조사) ①·② (생략)

③ 현지조사 시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인조사장비·인력 등의 증감 사항을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) ①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1의 양

5. 시·군 지진재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

7. -----
--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--

6. 지진재해 수습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

제7조(원인조사 시기) ① -----
----- 지진재해 -----

----- 기간-----
-----.

② ----- 재해규모 -----
----- 충청북도 -----

----- 원인조사 기간을 연장 -----
--.

제8조(현지조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재해규모-----

-----.

제9조(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) 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-----

식에 따라 지진피해 원인조사
초동보고서를 충청북도 지역본
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최종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
과보고서는 별지2의 양식에 따
라 원인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
에 작성·완료하고, 업무수행과
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
께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에게 제
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
만,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
등이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
할 수 있다.

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경감에
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
·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
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구를
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지진
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의
견제시 사항을 원인조사단으로
부터 제출받아 「지진피해 원인
조사 결과보고서」를 작성·발
간하고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
하여야 한다.

----- 지진재해 -----

-----.

② 조사단장은 -----

-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
서를 작성하여 -----
----- 제
출하여야 -----.

-----.

③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지진
재해 경감-----

----- 조사단장으로 하여
금 추가적-----.

④ ----- 지진
재해 -----

----- 「지진재해 원인
조사 결과보고서」를 발간하여
야 -----
-----.

청 등)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진피해가 없는 인근 시·도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.

②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지진 피해를 입은 인근 시·도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에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청 등) ① -----
----- 원인조사를 위하여 지진재해-----

----- 등 필요한 지원을 -----.

② ----- 지진 재해-----

----- 원인조사단의 파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관 계 법 령

[지진·화산재해대책법]

제20조(지진·화산재해 원인조사·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·운영 등) ①

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·화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·화산재해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6., 2015.7.24.>

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·화산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진·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6., 2015.7.24.>

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국외에서 대규모의 지진·화산재해가 발생하면 지진·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6., 2015.7.24., 2017.3.21.>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,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,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7.24.>

⑤ 시·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<개정 2013.8.6., 2015.7.24.> [제목개정 2015.7.24.]